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
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심사보
고서

1994. 7. 13
시민보사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4년 6월 29일. 영
등포구청장
- 나. 회부일자 : 1994년 6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26회 영등포구의회(임시회) 제
1차 시민보사위원회('94. 7. 13)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시민국장 文忠實)

가. 제안이유

다수 공중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위생관리를 절저히 하여
공중위생관리와 국민보건의 향상증진을 도
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1) 부과대상 및 기준에 관한 사항
- 2) 부과 및 징수 절차에 관한 사항
- 3) 납부기한 및 납부독촉과 체납처분에 관한
사항
- 4) 결문 및 이외제기에 관한 사항
- 5) 시행규칙 제정

3. 專門委員 檢討報告 要旨

(전문위원 조대현)

1. 조례(안)의 명칭 수정과 한글로 재작성 요함.
 - “영등포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부과징수
에 관한 조례”를 “영등포구 공중이용시설
과태료 징수조례”로 수정하고,
 - 1969 법령용어정비 요령에 의하여 한글
전용하도록 되어 있어 한글로 재작성하여야
될 것임(원안 제9조 청문의 한자 잘못되
었음)
2. 제2조(부과징수권자) 조문은 공중 위생법 제
44조가 정한 사항이므로 조례로 정할 필요
없어 삭제 요한다고 사료됨.
3. 제4조(부과기준)내용 수정요함.
 - 1) 제1항 별표 과태료부과기준표의 내용 중

“부과대상”으로 표기하는 “위반내용”이나
“위반행위”표현으로 수정 필요하다고 봅
니다.

그 이유는 “별표”는 제4조 제1항의 종속
적인 내용이므로 제1항 내용에 위반내용을
조사 확인후 별표 기준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되었기 때문에 용어의 통일성을 기
하기 위하여 “위반내용”으로 표기함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2) 별표 제1차 과태료 금액은 기본 과태료
금액으로 명기되어야 하나, 제4조3항의 1
/3경감규정에 따라 정할 과태료금액으로
명기는 잘못된 것으로 사료됨. 그 이유는
별표 제1차 과태료 금액으로 정할 경우
본 조례(안) 제4조3항에 의거 1차 위반시
1/3 경감 규정할 경우 또, 1/3을 경감할
수 있고 경감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차 과태료 금액의 기본과태료로 보아
기본과태료 금액보다 적게 처분하는 결
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중대한 하자가 발
생하게 됨. 따라서 ·별표의 1차 과태료
금액은 기본과태료 금액으로 정정 명기
하고 원안의 과태료금액은 경감시 적용
되는 과태료를 구분표시 해주는 것이 앞
에서 자적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게 될
것임.

4. 제5조(부과통지)

- 1) 제1항 “과태료를 부과할때”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로 수정함이 적절한 표
현이라고 사료됨.
그 이유는 “과태료를 부과할때”와 “과태
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의 표현은 그 의
미가 시간적으로 다른 의미임.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때”라고 표현해
야 과태료처분을 하기전에 당해 위반내
용을 조사 확인후란 문맥이 이어지는데
적절하고 과태료 처분 하기전에 당해 위
반내용을 조사 확인해야 한다는 훈시적
규정으로 기능을 다할 것으로 사료됨.
- 2) 제2항에 “위법부당”을 붙여서 표기할때
2개사항을 함께 필요로 하는 경우에 사
용되는 병합적 접속사로 후속문장과 연
결에 문제있고, “위법 또는 부당”으로
표현해야 선택적 접속사이므로 후속문장

과 연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또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하거나 변
경하도록 처리 기한적 규정을 명문화 해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됨.

- 제6조(납부기한) 납부기간은 부과통지에 관한 일부사항으로 부과통지 조문에 조항으로 규정하면 충족되는 것으로 새로운 조문으로 정할 필요는 적다고 사료됨.
 - 원안 조례상 서울시에서 시달한 지침내용중 과태료를 분할 납부할 수 없다는 내용누락 부과통지문에 삽입 요망됨.
 - 부과징수 사무의 신속성을 위하여 과태료 부과징수 감면, 과오납금의 환불등 필요하고 인정되는 사무실 소속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조문신설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修正案의 要旨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94. 7. 13 윤태봉의원외
 1인 발의

나. 수정이유

○ 제6조 납부기한은 제5조 부과통지에 관한
 일부내용에 해당하므로 제5조 조문에 삽
 입하면 충족되므로 제6조 조문은 삭제하고
 제5조 2항으로 삽입.

다. 수정 주요골자

○ 제6조(납부기한) 제5조 1항에 의한 과
 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2항으로 삽입.

- 제6조가 제5조 2항으로 삽입됨에 따라
나머지 조례조항 상향 조정

5. 審查結果 : 수정안가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중이용시설과 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안에대한 수정안

의안 관련 제 출 년 월 일 : 1994년 7월 13일
번호 호 제 출 자 : 윤태봉의원외 1인

1. 수정이유

- 제6조 납부기한은 제5조 부과통지에 관한 일부내용에 해당하므로 제5조 조문에 삽입하면 총족되므로 제6조 조문은 삭제하고 제5조 2항으로 삽입

2. 수정 주요골자

- “제6조(납부기한) 제5조 1항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2항으로

- 제6조가 제5조2항으로 삽입됨에 따라 나머지 조례조항 상향 조정

수정안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 5 조 (賦課 通知)	제 5 조 (賦課 通知)
① 생략	① (원안과 같음)
②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위법 부당한 사항이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 6 조 (납부기한)	하여야 하며, 1항에 의한 과태료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제 7 조 (납부독촉) 제6조규정에 의한.....	제 6 조 (납부기한) 삭 제
제 8 조 (체납처분) 제7조규정에 의한.....	제 6 조 (납부독촉) 제5조 규정에 의한.....
제 9 조 (청 문)	제 7 조 (체납처분) 제6조 규정에 의한.....
제10조 (이의 제기등)	제 8 조 (청 문)
제11조 (준용기준)	제 9 조 (이의 제기등)
제12조 (시행규칙)	제10조 (준용기준)
	제11조 (시행규칙)

서울특별시永登浦區公衆利用施設過 怠料賦課·徵收에 關한 條例(案)

의안
번호 241

제 출 년 월 일 : 1994년 6월 일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制定背景

다수 공중이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대규모 건축물이나 시설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중 위생 관리와 국민 보건의 향상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條例範圍

공중위생법상 위생관리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가 법적 의무이행사항을 불이행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촉구를 위한 법정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한함

3. 制定根據

공중위생법 제43조, 제44조, 동법 시행령 제28조

4. 制定理由

자치구에서 공중위생법상 공중 이용 시설 관리 실시를 위한 자치법규제정.

5. 主要內容

- ①賦課對象 및 基準에 關한 事項
- ②賦課 및 徵收節次에 關한 事項
- ③納付期限 및 納付督促과 滯納處分에 關한 事項
- ④聽問 및 異意 提起에 關한 事項
- ⑤施行規則 制定

6. 條例案 : 별첨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永登浦區公衆利用施設過 怠料賦課·徵收에 關한 條例(案)

제1조(目的) 이 條例는 公衆衛生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제44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過怠料 賦課徵收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賦課·徵收權者) ① 과태료는 법 제44조·영 제28조에 의거 處分權者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賦課 徵收한다.
② 區廳長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사무를 所屬公務員에게 委任할 수 있다.

제3조(賦課對象)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법 제26조 제2항 규정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한 자.
2. 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衛生管理 擔當者를 指定하지 아니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精密檢査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精密檢査를 하지 아니한 자.
4. 법 제2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吸燃區域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虛偽報告를 한 자와 관계공무원의出入·檢査 기타 조치를 拒否, 防害 또는 忌避한 자.
6.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改修·改善 또는 是正 命令에 違反한 자.

제4조(賦課基準) ① 과태료의 부과는 당해 違反內容을 調査確認후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여야 하며 이때 반드시 과태료 算出調書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반내용이 2이상일 때에는 重한 處分基準에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算定되어 50만원을 超過할 수 없다.

③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 행위의 動機와 그 結果·保健環境 관련 功績등을 참작하여 1차위반에 한하여 3분의 1 범위내에서 減額할 수 있다.

제5조(賦課通知) ①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과태료 處分 對象者에게 반드시 과태료 處分 통지서 및 納付 통지서를 送付하여야 한다.

② 과태료를 부과 징수함에 있어 위법 不當한 사항을 확인한 때에는 그 처분을 取消하거나 變更하여야 하며 이를 과태료 處分對象者에게 送付하여야 한다.

제6조(納付期限) 제5조 1항에 의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納付通知書를 發付한 날로부터 30일以内로 한다.

제7조(納付督促)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기한이 經過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督促帳을 발부하여야 하며 이때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제8조(滯納處分)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독촉을 받은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地方稅 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9조(聽問) 구청장은 과태료를 賦課하고자 하는 경우 10일 이상의期間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口頭 또는 書面에 의한 意見陳述機會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10조(異意提起등) ① 과태료부과에 대한 不服이 있는자는 그 처분의 通知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구청장에게 异意를 提起할 수 있다.

제11조(準用規定)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條例에서 규정된 것을 除外하고는 地方稅 徵收의 例에 의한다.

제12조(施行規則) 이 조례의 施行에 관하여 必要한事項은 規則으로 定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 태 료 부 과 기 준

관 계 법 규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법 제26조 제2항 법 제43조 제7호	공중이용시설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차 : 50만원 2차 : 5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7조 제2항 법 제43조 제8호	○위생관리담당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7조 제3항 법 제43조 제9호	실내환경기준 정밀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8조의2 제1항 법 제43조 제10호	흡연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9조 제1항 법 제43조 제5호	당해 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9조 제1항 법 제43조 제5호	관계공무원의 출입, 검사 기타 조치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법 제29조 제2항 법 제43조 제6호	위생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개수, 개선 또는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1차 : 30만원 2차 : 40만원 3차 : 50만원

- * 1) 과태료 부과횟수 산정기준: 1차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12월이내에 같은 항목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2차 위반행위로 보고 같은 방법으로 횟수를 누증하여 계산한다.
- 2) 위반행위별 시정조치기간: 과태료 부과한 날로부터 60일 이내를 총 위반행위의 시정 및 보완조치 기간으로 한다.